



학교기업설치·운영 규정

제정일	2008.10. 1
개정일	2019. 1. 1
개정차수	4차
담당부서	학교기업

제 1 장 총 칙

- 제 1조 (학교기업 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계열(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내에 둔다.

제 2 장 학교기업 설치·운영

- 제 3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학교종목 및 관련 계열(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 ② 총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2.13)
- ③ 총장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 ④ 본교가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 제 4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 총장은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9. 2.13)
- ② 총장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본교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 3 장 조 직

제 5조 (조직)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본교의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산, 경영, 회계,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계열·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속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의 참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6조 (지원조직 등) ① 총장은 학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내 각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학교기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의 연구원 및 직원은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 7조 (운영책임자) ① 총장은 학교기업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기업 종목별로 학교기업 운영을 전담하는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② 운영책임자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③ 운영책임자는 사업운영임무를 수행하고, 사업운영 일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④ 운영책임자가 본교 소속 교원일 경우 수업시수의 조정, 인사고과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학교기업 참여교수) 총장은 운영책임자 외에도 학교기업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참여교수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시수는 참여정도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13)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개정 2009. 2.13)

② 당연직위원은 부총장 및 각 행정처·국장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2014. 1. 1, 2019. 1. 1)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기업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기업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교기업 기획·조정

4. 학교기업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8. 기타 학교기업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 (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 (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기타 학교기업 관련 중대 사항이 발생 시

제 5 장 현장 실습

제15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 총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16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총장은 당해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 6 장 기본재산

제17조 (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재산
3. 증여재산
4.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5.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6. 각종 사업수익
7. 차입금

제18조 (운영재원) 학교기업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0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9조 (재산관리의 제한) 학교기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2.13)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 7 장 수입 및 지출

제20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학교기업의 수입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기타 수익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학교기업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료
7. 기타 학교기업 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1조 (지출)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학교기업의 관리·운영비
2.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7. 본교 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기타 학교기업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 8 장 예산 및 결산

제22조 (학교기업의 예산) ① 총장은 당해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라 본교와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제23조 (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 운영책임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학교기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② 운영책임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준예산) ① 운영책임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추가경정예산) ① 운영책임자는 예산이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에 수익 등의 증감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자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제26조 (결산) ① 운영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아래의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기타관련 부속서류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학교기업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③ 운영책임자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결산서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회계처리

제27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총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제28조 (회계처리) ① 학교기업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처리 기준 및 재무제표의 양식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학교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학교기업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액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 (회계처리 및 회계직원) ①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② 운영책임자는 학교기업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 10 장 보상금 지급

제30조 (보상금의 지급) ① 총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2.13)

제 11 장 보 칙

제31조 (규정의 변경)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규정 관리 내규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13)

제32조 (해산) 학교기업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개정 2009. 2.13)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학교기업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3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학교기업의 주된 수입과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